

장애학생

장애학생 권리 보장, '지원'이 아닌 '자치'가 답

안나연 기자 na@k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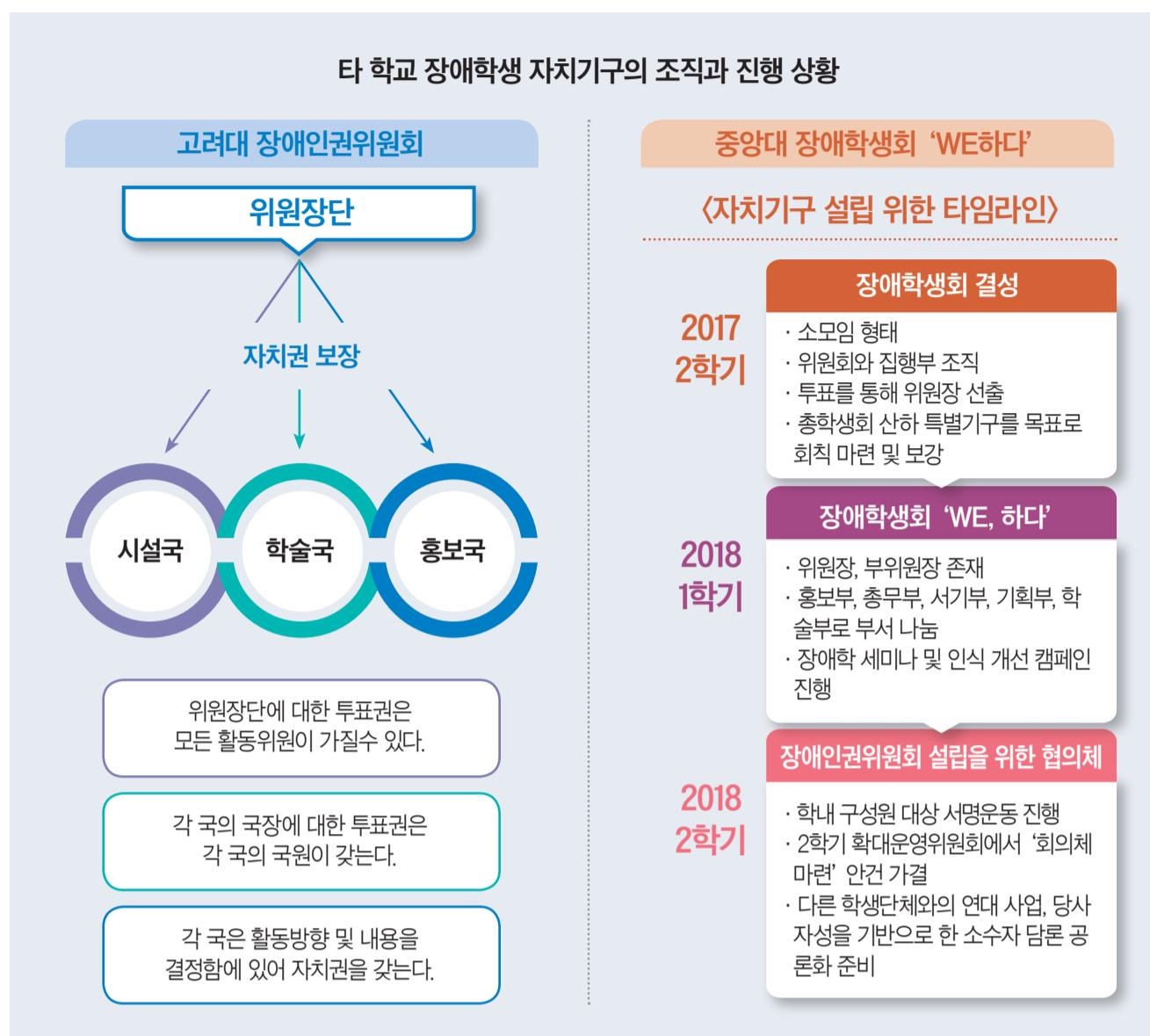
“정경대 교수회관, 자연사 박물관 등 장애인 승강기가 없는 건물이 있는데 이럴 때 자치기구의 필요성을 실감한다.” 서울캠퍼스(서울캠퍼스)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김민제(행정학 2018) 씨의 말이다. 그는 이어 “총학생회(총학)가 이번 축제에 배리어프리 존을 만든 것은 긍정적이었다”며 “다만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매년 우리학교엔 최소 15명의 장애학생(서울캠퍼스 10명, 국제캠퍼스 5명)이 고른 기회전형으로 입학한다. 그러나 우리학교에는 이들의 요구사항을 개진하고 입장을 대변하는 자치기구가 없다. 지난 2008년에 설립된 장애학생지원센터(지원센터)가 이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적 소수자 대변기구로서 요구되는 당사자주의를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없이는 우리의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당사자주의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요소다. 장애인의 인권 보장 및 권리 옹호를 당사자주의에 입각해 진행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에 대한 전문가는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며, 대변인이 대신하는 것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당사자주의를 실현한 기구를 학내에선 자치기구라고 할 수 있다. 서사무총장은 “장애학생이 자치권을 갖고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기구”라고 설명하며 “자신의 뜻을 스스로 행위하는 것이 맞춤형 복지의 시작이자, 민주주의의 실현”이라 말한다. 정책 수립에 장애인의 주도적인 목소리를 반영하려 노력하는 장애인인권포럼 김용구 사무차장도 “장애학생이 겪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당사자성이 요구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총학과 장애학생이 활발한 소통을 진행해도 장애학생만의 독자적 기구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말한다.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자치기구를 마련한 사례로 ‘고려대 장애인권위원회’(고대 장인위)가 있다. 지난 1998년 발족돼 1999년 총학 산하 특별기구로 인준된 고대 장인위는 총학 일반규칙 제5조에 의해 그 자치성을 인정받는다. 고대 장인위 여동민(정치외교학 2017) 전임 위원장은 “독립성을 보장 받는 자치기구로서 존재할 수 있어 당사자주의 실천이 지속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며 “이는 의제를 발제하는 주체가 장애학생이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고대 장인위는 위원장의 임기를 한 학기로 규정했으며, 매 학기 종강총회에서 장인위에 소속된 활동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재정 독립성도 자치기구의 속성을 드러낸다. 고대는 특별기구 전체에 전체학생회비의 10%가 예산으로 할당된다. 이는 특별기구연설회의체를 통해 고대 장인위를 포함한 8개 특별기구로 분배된다. 또 예결산 특별위원회를 통해 예·결산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이와 같은 재정 독립성 확보는 곧 활동의 주체성을 보장한다.

여 전임 위원장은 “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돼 다른 단체와 협력도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고대 장인위는 장애학생이 겪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학내 다른 단체와 협상도 진행한다. 이번 학기에도 학내 언론사 ‘KUTV’와 연합해 ‘고연전’ 5개 경

기 중 4개 경기의 자마을을 제공을 추진했다. 여 전임 위원장은 “현재는 협의 과정을 통해 장애학생의 권익을 보장하려고 노력하나 장기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라 밝혔다.

고려대에 재학 중인 홍채원(경영학 2017) 씨는 “장애 당사자로서 학교의 대소사에 자치기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하며 “나의 일을 나의 말로 할 수 있어 참정권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제도나 시설도 당사자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개선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자치기구가 학교 생활 속 장애학생의 권익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한양대 역시 자치기구를 통해 장애학생의 권익을 보장하고 당사자주의를 실천한다. 1999년 발족 이후 해체됐던 ‘한양대 장애학생인권위원회(한양대 장인위)’는 2008년 재설립돼 장애·비장애 학생이 동등한 권리를 지향한다. 총학 산하 중앙특별위원회

로서 자치권을 보장받는다. 한양대 장인위 정명철(경영학 2015) 위원장은 “학생 개인으로 존재할 땐 묵살당할 수 있는 장애학생의 권리가 기구를 통해 보장된다”며 지난 2018학년도 1학기 축제기간에 설치된 배리어프리 존을 예로 들었다.

배리어프리 존은 휠체어 사용자의 시야와 통행로 확보를 통해 장애생의 축제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구역이다. 정 위원장은 “독립된 기구로서 장애학생 당사자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총학과의 협력이 가능했다”며 “축제뿐만 아니라 교내 이동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총학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다”라 말했다.

한양대 장인위는 전체 학생회비의 약 1%를 예산으로 분배 받으며 재정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예산은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전학대회)를 통해 인준받는다. 또 투표를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 대표자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총학 선거 시기와 동일하게 11월부터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등록과 선거를 진행해 12월에 최종 결정된다.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의 표를 받은 후 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학교는 장애학생 당사자주의를 실천하는 자치기구가 없다. 이에 서울캠 50대 총학 황규리(자율전공학 2016) 부회장은 “장애학생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자 지원센터 측에 조언을 구했으나, 공약으로 구상한 내용을 이미 지원센터에서 실현하고 있었다”며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기 보단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복지와 연결하고, 장애학생과 개별적으로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원센터는 자치기구가 갖는 당사자주의를 표방할 수 없다. 지원센터는 특수 교육법 제30조에 근거해 대학이 소수자 인권 존중을 위해 설치한 행정 기구일 뿐이다. 자치권을 갖고 있지도 않다. 다수의 전문가 역시 두 기구의 역할이 상이하다는 것에 동감한다. 장총련 서사무총장은 “지원센터는 서비스 제공기관일 뿐”이라며 “장애학생을 위한 정치활동을 하거나 장애생이 본인의 뜻을 찾는 곳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편의 제공과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혼돈해선 안된다”며 “서비스의 대상은 결코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대 소모임 ‘WE, 하다’는 학내 장애학생 자치기구 마련을 준비한다. 대표를 맡은 김세주(사회학 2015) 씨는 “자치기구의 발족을 통해 제도적인 문제를 학교 담당자와 대면해 지원센터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논의 할 수 있다”는 의의를 밝혔다. 이어 “지원센터나 총학이 모든 문제를 처리하면 장애생은 정치적 주체가 아닌 복지의 대상으로 남을 것”이라 말했다. 이에 공감하는 학내 구성원 430여 명의 서명을 바탕으로 ‘장애학생인권위원회 신설준비를 위한 협의체’가 마련됐다.

장애인권포럼 김 사무차장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배제되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며 “당사자인 내가, 나의 의견을 말하겠다’는 것은 중요성 이전에 당연한 이야기”라고 말한다. 인터뷰에 응한 장애학생 김 씨 역시 이에 공감하며 “학내 자치기구의 역할이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달되기 위해선 필요하다”고 전했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